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64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윤준병 · 박민규 · 서삼석
김원이 · 이개호 · 김성범
이정현 · 박범계 · 임미애
朴芝源 · 문대림 의원
(11인)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민간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6월에 시행 예정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국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1항).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수행 기구를 구체화함(안 제28조제2항).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제29조에”를 “제27조에”로, “빈집활용지원센터에”를 “빈집정비 지원기구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은행사업의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빈집은행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7조제1항 각호, 제10조제1항 각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빈집은행사업의 시행) ① <u>지방자치단체의</u> 장은 관할 구역 내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빈집은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u>지방자치단체의</u> 장은 빈집은행사업의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u>빈집활용지원센터에</u>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③ (생략) <u><신설></u>	법률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빈집은행사업의 시행)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u>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u>----- -----<u>제27조에</u>-----<u>빈집</u> <u>정비 지원기구에</u>----- -----<u>. 이 경우 지</u> <u>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은행사</u> <u>업의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빈</u> <u>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u> <u>행하게 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u> <u>양수산부장관은 빈집은행사업</u>

④ (생 략)	<u>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7조제1항 각호, 제10조제1항 각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